

수질 및 성분검사의 온천법령 해석

I. 수질검사

- 온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해석
 - 온천법 시행령 제2조 온천의 성분기준은 온천수 수질의 기준을 의미하며,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온천수에 질산성질소, 테트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온천법상의 기준이하인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수질검사는 위의 성분기준 검사와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총대장균군의 검출여부 등을 포함하며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다.

II. 성분검사

- 온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해석
 -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다. 검사기관은 온천수의 주요성분이 무엇인지를 검사하며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총용존고용물,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 황산염, 중탄산이온, 탄산염이온, 유리이산화탄소, 불소, 실리카, 철, 망간, 리튬, 스트론튬, 납, 아연, 황화수소 등의 성분 포함여부를 검사하여 유황온천, 탄산온천 등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III. 수질검사와 성분검사의 차이

- 온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수질검사는 온천수가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이상이 없는지 인체의 유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고, 성분검사는 온천 발견시 주요성분을 조사하여 무슨 온천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